

• 21세기 미래문화도시 • 더불어 행복도시 • 사람중심 열린도시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291호 2022. 1. 12.(수)

【규 칙】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52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) ... 1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	1. 제안이유 ○ 인사위원회 관련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사항(2022.1.13. 시행)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○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2제1항에서 제2호(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)가 삭제됨에 따라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고자 “연수구 지방의회 추천 위원(2명) 의무적 구성 규정” 삭제(제4조제2항 단서 삭제) ○ 입법의 경제성, 자치법규의 해석·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령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)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운영상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규정 삭제 및 변경(제4조 전반)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 남 석

2022. 1. 12.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52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.

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. 1. 13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사위원회
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u> <u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각 국장, 보건소장,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중 2명, 법 제7조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10명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과 여성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</u>	<u>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.</u> <u>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<u>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.</u>